

《 수도요금 전자고지 이용약관 신규조문대비표 》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p>제1조(약관의 적용) 이메일·휴대전화로 수도요금 청구서 또는 자동납부 청구서(이하 “수도요금 고지서”, 체납 및 수시분 청구서는 제외)의 청구 내용을 받고자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등(이하 ‘전자고지 이용자’라 한다)과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및 수도사업소(이하 ‘본부’라 한다)간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p> <p>제6조(수도요금 감면) ①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은 상수도 요금부과액의 1%이며 최소 200원부터 최대1,000원까지 감면됩니다. 단, 종이 고지서 발행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② 생략</p>	<p>제1조(약관의 적용) 이메일·휴대전화로 수도요금 청구서(체납 포함) 또는 자동납부 청구서(이하 “수도요금 고지서”, 수시분 청구서는 제외)의 청구 내용을 받고자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등(이하 ‘전자고지 이용자’라 한다)과 서울아리수본부 및 수도사업소(이하 ‘본부’라 한다)간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p> <p>제6조(수도요금 감면) ①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u>1. 상수도요금 1회당 감면액 : 20,000원 이하 200원, 20,000원 초과 시 1퍼센트(이 경우 총 할인액은 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u> <u>2.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모두 신청시 첫감면액 (기간 : 2024.6.3.신청분부터 2026.12.31.신청분 까지 적용) : 상수도요금 부과시 3,000원(상수도요금 부과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그 부과액을 한도로 할인한다. 단, 해당주소의 동일 사용자 기준 1회만 제공한다.)</u> <u>단, 종이고지서 발행을 병행하여 신청하신 경우에는 1회당 감면액 및 첫감면액 모두 감면하지 않습니다.</u> ② 생략</p> <p>[부 칙] 제1조 본 약관은 2024년 7월납기부터 적용합니다. 제2조 제6조제1항제2호 개정사항은 본 약관 시행 이전에 이미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한 사람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p>	<p>제1조 문구변경</p> <p>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설</p>

전자고지 이용약관(본부 ↔ 수도사용자등)

제1조(약관의 적용) 이메일·휴대전화로 수도요금 청구서(체납 포함) 또는 자동납부 청구서(이하 “수도요금 고지서”, 수시분 청구서는 제외)의 청구 내용을 받고자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등(이하 ‘전자고지 이용자’라 한다)과 서울아리수본부 및 수도사업소(이하 ‘본부’라 한다)간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전자고지 신청 및 등록) 본부가 정한 전자고지 신청 방법(인터넷, 유선전화, 휴대전화 및 서면)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의 정보가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전자고지 이용자로 등록합니다. 단, 전자고지 신청인이 수도사용자등과 다른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3조(전자고지서 발송) ① 전자고지 이용자에게는 신청자의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요금부과 내역을 발송하고 종이 고지서는 송달하지 않습니다.

단, 신청 시에 종이고지서 발행을 선택한 경우에는 종이고지서 송달을 병행합니다.

② 제1항의 전자고지서의 내용은 수도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내용에 준하며, 필요시 내용을 변경, 추가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4조(전자고지서 송달) 전자고지서는 “전자정부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전자고지 이용자의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송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전자고지 해지 및 변경) ① 전자고지 이용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전자고지가 해지되고 종이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단, 해당 월 고지서를 이메일·휴대전화로 송달받은 이후에 해지한 경우는 다음 납기부터 종이고지서가 발송됩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자고지 이용자의 해지 신청이 없어도 본부에서는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허위내용으로 가입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전출 등으로 해지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3. 신청오류, 회원탈퇴 등 기타 직권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번호, 종이고지서 발행여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이사 등으로 전출시 전자고지 미해지로 인해 전입자가 종이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산콜센터나 사업소에 이사정산을 하여 이사가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이고지서를 발행하는 전자고지로 직권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수도요금 감면) ①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1. 상수도요금 1회당 감면액 : 20,000원 이하 200원, 20,000원 초과 시 1퍼센트(이 경우 총 할인액은 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모두 신청시 첫감면액(기간 : 2024. 6. 3.신청분부터 2026. 12. 31.신청분까지 적용) : 상수도요금 부과시 3,000원(상수도요금 부과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그 부과액을 한도로 할인한다. 단, 해당 주소의 동일 사용자 기준 1회만 제공한다.)

단, 종이고지서 발행을 병행하여 신청하신 경우에는 1회당 감면액 및 첫감면액 모두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② 전자고지 신청(변경, 해지)사항은 당월 8일까지 신청(변경, 해지)한 것에 대하여 당월에 반영되며 그 이후에 신청(변경, 해지)한 사항은 다음 납기에 적용됩니다.

제7조(전자고지 이용자의 의무) ①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를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월 20일전까지 변경된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송달받지 못하였거나, 종이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송달 요청 하셔야 합니다.

② 이사 등 전출 시에는 전자고지 해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8조(정보이용 및 활용) 전자고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자고지와 관련된 납부자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가 수집 및 이용되며 신청인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전자고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도조례, 수도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제1조 본 약관은 2016년 7월납기부터 적용합니다.

제2조 본 약관시행 이전에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는 전자고지 이용 수용가는 종이고지서 미발행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부 칙]

제1조 본 약관은 2021년 3월납기부터 적용합니다.

제2조 본 약관시행 이전에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는 전자고지 이용 수용가는 종이고지서 미발행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부 칙]

제1조 본 약관은 2024년 7월납기부터 적용합니다.

제2조 제6조제1항제2호 개정사항은 본 약관 시행 이전에 이미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한 사람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